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2811 판결 [보증채무금]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281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 9. 8 선고 2004나7583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AA금융(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AB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권BA외 4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CACA조합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CACA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BB)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 9. 8. 선고 2004나7583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원고와 CACA조합(아래에서는 'KK신협'이라고 한다) 사이의 이 사건 대출알선계약은 2002. 11. 4. KK신협에 대한 경영관리가 개시됨으로써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출 알선업무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KK신협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무렵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이 KK신협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에도 원고는 계약서 제18조에 따라 자신이 알선한 대출의 원리금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에라도 대출 원리금이 18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그 대출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원고의 책임범위는 계약서 제10조에 따라 KK신협으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수금 계정에 입금해 둔 금액 및 KK신협에 납입한 보증금에 한정되므로, 가수금 계정에 입금되어 있던 금액과 2002. 10.분 수수료 중 가수금 계정에 입금될 금액 및 KK신협에 납입한 보증금은 원고가 알선한 대출금 중 18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원리금에 충당·상계되어 그 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그 나머지로서 2002. 10.분 수수료 중 대출 부실화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111,011,600원의 파산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KK신협이 2002. 11. 4.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알선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였던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대출금의 회수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 대하여 대출 원리금 연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KK신협에 대한 경영관리와 파산선고로 인하여 대출 원리금 연체가 증가하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비로소 18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까지 원고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KK신협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KK신협에게 원고의 대출금 회수 책임을 면하게 할 만한 다른 협조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연체에 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KK신협에 대한 경영관리가 개시되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출알선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KK신협의 대표권을 갖는 관리인의 의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가 알선한 대출에 관하여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 제18조의 적용범위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비로소 대출 원리금의 연체기간이 18개월을 넘게 된 경우에도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원고가 가수금 계정에 입금된 금액 및 보증금을 한도로 대출금 연체에 관한 책임을 지고 일정 부분의 수수료가 보장되는 이 사건에서 계약서 제18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파산채권이 111,011,600원에 한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계약의 종료사유, 법률행위의 해석,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의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04. 11. 4.에 제출되었다),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